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2. 18 선고 2015가합100445 판결 [보증금청구]

전 문

원고주식회사 인포피아

피고A

변론 종결2015. 12. 17.

판결 선고2016. 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0원 및 그중 8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0.부터, 94,4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6.부터 각 2015.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0원 및 그중 8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9.부터, 94,4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도소매업, 헬스케어 서비스업, 병원 경영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베트남 하노이시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B(B Co., Ltd, 이하 'B'이라고 한다)의 주식 98.8%를 보유하면서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B와 사이에, 2012. 5.경 원고가 한국형 병원과 의료장비를 턴키(Turnkey)/EPC1) 방식으로 베트남에 수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B이 그 사업 개발 및 수주를 지원하고 원고의 지사 역할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계적으로 추가 약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약정서 또는 업무협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 업무협약의 부속물로 추가하기로 하였고, 2012. 7. 3. 위 업무협약의 부속 약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협의 의사록(갑 제4호증)을 작성하였다.

1. 2012년도 목표사업(프로젝트 사업수주) 일정

- 1) 사업명: 베트남 건설부 산하 500병상 규모의 C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 사업예산: 1억 불(병원건설 6000만 불, 의료장비 4000만 불)
- 3) 시기: 수주계약완료(2012. 7.~8. 이내), PF확정완료(2012. 10. 이내)
- 4) 프로젝트자금(PF) 실행: 베트남 정부보증하, 한국수출입은행(미래산업금융실)에서, Direct Loan 방식으로 지원

2. 베트남 현지 법인(지사)의 발족

-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수주계약 완료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정 시 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향후 추가 수주의 확대를 위해, 베트남 현지 사업법인[지사, D(가칭)]을 발족한다.
 - 2) B은 원고가 발족한 베트남 현지 사업법인을 위탁받아 대행 운영한다.
- (베트남 현지법인의 발족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제반 행정사항은 B에서 준비)

3) 원고는 B의 A 사장, E 박사(이상 2인)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인건비, 계약직)를 지급한다(월 US\$6,000/1인 * 2인 = US\$12,000/월, 2인)

3. 수익분배(Profit Sharing) 모델

1) 상기 사업의 의료장비 분야 공급/수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다.

(의료장비 공급/수출 프로세스: 원고 본사 → 원고 베트남 법인 → C)

2) 원고의 베트남 법인이 획득한 순수익의 30%를 B의 A 사장, E 박사에게 할당(할당 30% 중 10%는 본 사업 관련 베트남 정부 관계자에게 할당)

3) 할당비율(30%)의 지급 금액의 범위(상/하한선)

본 사업 관련 의료장비 부분 총 수주계약금액의 2% 이상 3% 이내

4. 기타(특수사항)

1) 임시적으로 3개월(2012. 7. 2.~ 9. 30.) 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 성격의 자문료(2명)와 업무추진 경비를 총 5만 불 한도내에서 전도금 형태로 선급 지원

[3개월 자문료(인건비, 2인): US\$36,000, 업무추진 경비: US\$14,000 이내]

2) 본 사업의 소기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된 경우(수주 및 사업완료), 상기 수익분배 할당비율(30%)에서 기지급된 전도금을 공제

3) 단, 불가항력적 사항으로 2012. 12. 30. 이내에 사업이 무산된 경우, 상기 선급 지원된 전도금 금액의 30%(원고): 70%(B) 비율로 양사가 부담

4) 본 사업 진행을 위하여, 수주 완료 및 현지법인 설립 전, 원고 본사의 담당직원이 현지 장기 체류 시 B에서 숙소 및 사무공간, 기타 편의를 무상 제공

5) B은 상기의 사업과 같은 신규병원건립 프로젝트를 베트남 내에서 연간 최소 1건 이상 발굴 및 개발 다. 원고는 위 의사록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2. 7. 13. B에 사업추진 전도금으로 미화 50,000달러(이하 미화 달러는 '달러'라고만 표시한다)를 지급하였고, 2012. 11. 19.경 베트남 건설부 산하 C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예비계약(Preliminary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B이 기대했던 베트남 정부의 지급보증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채 당초 예정했던 일정이 지연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B의 업무추진자금 용도로 B와 사이에 2012. 11. 28. 45,000달러, 2013. 5. 20. 30,000달러에 관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돈을 B에 지급하였고, 2013. 8. 31.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합계 75,000달러에 대한 만기를 2013.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다시 B와 사이에, ① 2013. 11. 18. 70,000달러를 이자 연 5%(대여기간 종료일에 지급), 대여기간 2013. 11. 18.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0. B에 70,000달러를 지급하였고, ② 2014. 2. 20. 80,000달러를 이자 연 5%(대여기간 종료일에 지급), 대여기간 2014. 2. 25.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5. 80,000달러를 B에 지급하였으며(이하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와 E은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12. 16. 기준 달러환율(매매기준율)은 1,180원/달러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9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달러 대여금의 원화 환산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대금 1,500,000달러(이후 1,250,000달러로 변경됨)를 지급하되 그중 계약금으로 30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여, 초기 3개월 동안의 용역대금으로 계약금 중 50,000달러를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의 경영상 현금 지출이 많아지면 안 된다는 이유로 B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형식으로 우선 지급하고 이후 베트남 정부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되면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B에 위 계약금 중 합계 225,000달러를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위 각 계약에 따라 B에 지급한 15,000달러는 그 실질이 대여금이 아니라 용역대금이므로, 피고는 소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원고는 위 증거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부지로 진술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8호증의 각 1, 2, 을 제9 내지 11,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1) 2012. 7. 13. 지급된 전도금 50,000달러와 관련하여 B은 2012. 7. 12.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B에 베트남 C 건립사업 수주 및 제반 베트남 사업에 관한 자문용역수수료 50,000달러를 지급하고, 2012. 12. 30. 이내에 사업이 무산된 경우 B은 지급받은 수수료의 70%와 그 이자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자문용역계약서(을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이후 원고와 B은 2013. 10. 17. '2012. 5.자 업무협약서와 2012. 7. 12.자 자문용역계약서를 기반으로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B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베트남 현지 정부 관련 업무와 각종 인허가/제반 행정사항, 원고의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지원, 이 사건 사업의 수주 및 계약 등을 위한 자문과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자문용역대금을 1,500,000달러로 하여, 그중 계약금 300,000달러를 본 계약 체결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되, 원고가 B에 기지급한 2012. 7. 12.자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자문비용 50,000달러, 2012. 11.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45,000달러, 2013. 5.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30,000달러 등 합계 125,000달러를 위 계약금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의 자문용역계약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한 원고의 직원 F은 2014. 2. 10.경 피고와 '원고가 B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1,275,000달러로 하되, 계약금 300,000달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의향서(LOI, Letter Of

Interest) 발행 후, 중도금 600,000달러는 착수금 입금 후, 잔금 375,000달러는 착공식 후 각 지급한다. 원고가 기존에 지급한 대여금 합계 195,000달러(= 2012. 7. 13.자 50,000달러 + 2012. 11. 30.자 45,000달러 + 2013. 5. 22.자 30,000달러 + 2013. 11. 20.자 70,000달러)를 용역대금 중 계약금에서 공제하여 컨설팅계약 후 나머지 105,000달러를 지급하되, 그중 80,000달러는 2월 중순에, 25,000달러는 4월 초순에 각 지급하고, 95,000달러는 7월 중순에, 100,000달러는 10월 중순에 각 대여금에서 대체함으로써 분기별 손익효과를 분산하고, 이자는 대여금 대체 시 별도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컨설팅대금 지급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원고와 B은 2014. 2. 20. 80,000달러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그 무렵부터 2014. 2. 말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B에 지급할 용역대금 1,275,000달러 중 계약금 300,000달러에서 기존에 지급한 대여금 275,000달러(= 195,000 + 80,000)를 차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자문용역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4) 그러나 자문용역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자, 피고는 2014. 7. 2. F에게 '경영을 이유로 대여금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더 이상 대여금이 아닌 것을 대여금으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항의하였다.

(5) 베트남 건설부 장관은 2014. 7. 25. C에 '협력투자 및 협력경영 방식으로 신규 C의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데 동의한다. 원고는 위 사업의 진행과 투자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고, 원고는 2014. 7. 30. 국내 언론에 베트남 건설부로부터 이 사건 사업 진행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후 B의 대표이사인 E은 2014. 8. 11. 원고에게 '건설부의 승인공문이 나왔으니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300,000달러 중 대여금 275,000달러를 정산처리하고 나머지 25,000달러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3, 4, 6, 7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21호증이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1) 내지 (5)의 각 사실과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B 사이에 정식으로 자문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에 원고가 지급할 용역대금에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15,000달러 등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확정적으로 B에 위 15,000달러를 포함한 자문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다만 위 15,000달러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당초 원고와 B은 2012. 5.경 체결된 업무협약 및 2012. 7. 3. 작성된 업무협의 의사록에서 ① 한국수출입은행이 베트남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의 발주자에 해당하는 C에 자금을 대여하는 직접차관방식(Direct Loan)의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였고, ②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주계약이 완료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확정되면 원고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B과 자문료를 월 12,000달러로 하는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며, B은 원고의 현지법인이 취득한 수익의 30%를 할당받기로 하였으며, ③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는 B이 자문용역계약 체결 전에 3개월분 자문료 상당액 36,000달러를 포함하여 전도금으로 받은 50,000달러의 70%를 반환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B이 위 자문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주계약 체결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전제로 원고와 B 사이에 별도의 자문용역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2) 그 후 원고와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원고에게 베트남 정부의 인허가와 원고의 현지법인 설립, 이 사건 사업 수주 등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원고가 B에 용역대금 1,500,0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3. 10. 17.자 자문용역계약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으나, 같은 날 '위 자문용역계약서는 외부제출용의 임시계약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상호 확인하며, 사업진행절차에 따라 정식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이면합의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B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직접차관방식으로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니 그 부분이 가시화될 때까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B은 원고에게 운영자금을 요청할 때마다 원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0. 17.자 자문용역계약서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C장과 정부관료 등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작성된 것이다.

(4) 원고의 직원 F이 2014. 2.경 피고와 '전체 용역대금 1,250,000달러 중 계약금 300,000달러를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의향서 발행 후 지급하되, 자문용역계약 체결 후 그중 10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95,000달러는 대여금과 대체한다.'는 내용의 용역대금 지급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당시 2014. 2. 중순에 계약금으로 8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것과 달리 원고가 2014. 2. 20. B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금으로 80,000달러를 지급한 것은, 원고와 B이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의향서가 발행되면 정식으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예정하였는데, 2014. 2. 20.경까지 위 금융지원 의향서를 발행받지 못함에 따라 자문용역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2012. 11. 28.자, 2013. 5. 20.자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와 달리 그 이후 체결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피고와 E이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0,000달러와 80,000달러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 1,180원으로 환산한 합계 177,000,000원[= 82,600,000원(= 70,000달러 × 1,180원/달러) + 94,400,000원(= 80,000달러 × 1,180원/달러)] 및 그중 82,600,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대여일인 2013. 11. 20.부터, 94,4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2.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5. 2. 4.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82,6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의 이자 지급을 구하나, 실제로 이를 대여한 것은 2013. 11. 20.이므로, 위에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일염

판사권수아

판사주은아

1)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이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뜻한다. 일괄수주를 의미하는 턴키(turn-key)와 비슷한 개념이다(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